제 201800106 호

형 식 승 인 서

신청인 성 명 : 김해규

상 호 : (주)티케이케미칼폴리에스터공장

사업장주소 :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3공단2로 6

소방시설설치 ·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· 제37조제1항 및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·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1. 품 명 방염제

2. 형 식 방염성물질(비내세탁성, 방염처리대상물 : POLYESTER 100 % 직물)

3. 형식승인번호 염18-7

4. 조 건 산업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본 승인은 취소될 수 있음

5. 비 고

2018 년 02 월 05 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검 사 성 적 서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93, Fax : 031-289-9066

성적서 번호 : 2018001106

1. 신 청 인 ☑ 원 본 ☐ 재발급
   - ○ 업체명 : (주)티케이케미칼폴리에스터공장
   - ○ 주 소 :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3공단2로 6
   - ○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 1700636 호, 2017. 12. 28.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3. 검사대상품목/시료명 : 방염제
4. 검사기간 : 2017. 12. 28. ~ 2018. 02. 01.
5. 검사방법 :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7. 검사환경
   - ○ 온 도 : (21.5 ± 1.1) ℃, 상대습도 : (45 ± 3) % R.H.
8. 검사결과 : 합격
   ※ 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페이지 참조)

확 인	실 무 자	확 인 자
	성 명 : 임 지 승 (서명)	성 명 : 박 정 호 (서명)

위 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행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18년 02월 05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Korea Fire Institute

※첨부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93, Fax : 031-289-9066

성적서 번호 : 20180010

형 식 시 험 결 과

업체명	(주)티케이케미칼 폴리에스터공장	형식승인번호	염18-7
종 별	방염제	형 식	방염성물질(비내세탁성, 방염처리대상물 : POLYESTER 100 % 직물)

시험항목			기준	결과				비고
조항	항목			시료(개)	검사결과		판정	
제4조	방염제의 이화학성능의 기준	외 관	시료 중에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될 것(침전물, 결정체 석출등)	1	혼입안됨		합 격	
		독 성	방염화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될 것	1	함유하지 않음		합 격	
		물성 변화등	방염 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할 것	1	변화없음		합 격	
		성분분석	구성성분이 명세서에 기재된 성분과 일치하여야 할 것	1	일치함		합 격	
		비 중	설계 값의 (98 ~ 105) % 범위이어야 할 것	해당없음			-	
		수소이온농도(pH)	pH (5 ~ 9) 이어야 할 것	해당없음			-	
		주도(KU)	설계 값의 (90 ~ 110) % 범위이어야 할 것	해당없음			-	
		점도(mPa · s)	설계 값의 (70 ~ 130) % 범위이어야 할 것	해당없음			-	
제5조	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	POLYESTER 100 % 직물	잔염시간 3 s 이내	3	0.0 s	0.0 s	0.0 s	합 격	
			잔신시간 5 s 이내		0.0 s	0.0 s	0.0 s		
			탄화면적 30 ㎠ 이내		7.6 ㎠	5.9 ㎠	6.4 ㎠		
			탄화길이 20 ㎝ 이내		3.4 ㎝	2.8 ㎝	3.2 ㎝		
			접염횟수 3회 이상		3회	3회	3회		
제6조	방염처리방법		방염처리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방법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. 다만,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방염제에 한하여 방염처리대상물의 표면에 두께 0.4 ㎜이상 도포하여서는 아니됨	1	적합		합 격	
제9조	방염제의 용기 등		용기는 방염제를 변질시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, 주 입구의 마개는 개봉시 파손되는 구조 또는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에 적합할 것	1	적합		합 격	
제10조	표 시		기재사항이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1	적합		합 격	

© Korea Fire Institute